

# 한 의 서

천만 고객과의 약속 🗍

갑 (피해자)

상호(성명): 류한숙

주민등록번호(사업자동록번호): 710215-2812358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82-37 소재 108동 201호

읔 (피보험자) 상호(성명): 김재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10718-3011711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51 소재 102동 2202호

1. 사고 경위

사교일시	2025년 01월 12일 19시 경	사고장소 강원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424 소재 하이원리조트 내 제우스 슬로프 하단부		
사고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에서 피보험자가 축 후방에서	피해자와 충돌 하여	전도되면서 상해가 발생된 사고임.	

## 2. 합의 내용

- 위 사고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자유의사에 따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을"은 "간"에게 위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게 될 법**롤상 손해배상금으로서 부담하는 금액은** 이백칠십이만이전 원이며, "갑"은 향후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모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합의가 최종 합의임을 서로 확인합니다.
- 위 사고에 관하여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각 보험사는 위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 독립책임액 비례분담 방식에 의거 해당 책임분을 지급합니다.

- 위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을" 의 보험자 DB손해보험주식회사가 지급합니다. 원은 "올" 이 "갑"에게 직접 입금합니다. 다만 "율"의 자기부담금

### 내용 및 조건

위 손해사정금액 \#2,722,000울 DB손해보험(주)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함.

▶ 피보험자 축 중복보험 존재하는바, 안분 하여 지급 예정임.

20

"갑"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읔" (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

3. 지급 방법

예공주	은행명	계좌번호
<b>弄</b> 起	<del>१</del> क्रिय	190820-56-035455

DR손해보험주식회사

한국해상화재손해사정(주)

1림(수원)/박현준/192168555

한국해상화재손해사정(주)

1팀(수원)/박禮준/192168555



# 보험계약자 동의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및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동의서

#### 1.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손해사정 비용 부담 안내

(1)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피해자 그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하며, 보험계약자 등은 아래의 경우애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 터 제3영업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회사가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

- ②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 니한경우
- ③ 보험회사가고용또는 선임한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 (2)손해사정 비용의 부담

(3) 아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 업자가 손해시정을 하게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 등이본건 안내 및 동의서를 포함한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

부터 3 영업일 내에 선임관련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② 손해사정지연시 사고현장훼손 손해확대 등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상기 ①에따른 선임 관련 안내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 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 (4)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 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계약자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87조 제186조의 2 보험업법감독규정 제9.21조의 2에따라 적법하게 등록 및 교육을 이수하

고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예탁하거나인허가보증보험에가입하여야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손해시정사가선임요청일기준최근 5년 내손해사정 업무관련보험관련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위반한사실과관련하여감 득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동)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고 손해사정사가선임요청일기준최근5년 내손해사정입무관련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관련법규들위반한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 력이 있는 경우
- 3) 손해사정사가선임요청일기준최근5년내감독규정제9-16조제5항에따라보험회사가보수를부담한계약과관련하여보험계약자등에게추가적인 보수를요구하거나이를수취한시실이확인된경우

4) 해당손해시정사에 대하여보험사기인지보고가되어조사가게시되었거나수사기관에서수사절차가진행중인경우

-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 중제 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5) 경우
- 6) 보험회사가선임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 지않는경우
- 손해사정사가손해사정 업무위탁 및손해사정사 선임등에 관한 모범규준제7조제4항에 따른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8)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손해를 정비업체,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2.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동의

손해사정 지연시 사고현장 훼손 · 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 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함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학

년 원 일 20

작성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수의자 □피해자 □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DR 손해보험주식회사 귀중

7/0/2/ (인)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및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동의서

(1)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선임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ㆍ피해자 그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하며,보험계약자 등은 아래의 경우에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

- 는데지공에 보고 그 보다 다음 수 있는데 되었다. 다음 아니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더 제3영업일이내에 보험금이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 니한경우
- (3) 보험회사가고용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경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 (2) 손해사정 비용의 부담

- ① 상기(1)의 ①, ②의 경우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② 상기(1)의(3)의 경우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합니다.
- (a) 아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전사를 선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채결된 손해사정 업자가손해시정을 하게 됩니다.
  - ① 보험계약자 등이본 건 안내 및 등의서를 포함한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따론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 부터 3 영업일내에 선임관련의사표시를하지 않은 경우
  - ② 손해사정지면시사고현장훼손 손해 확대 등피해가예상되는 경우로서 상기 ①에따른 선임 관련 안내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 사와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뿗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 (4)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정하는 손해사정사선임에 관한동의기준' 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등이 선임하고자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87조, 제186조의 2, 보험업법감독규정제9-21조의 2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 및 교육을 이수하 고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손해사정사가선임요청일기준최근 5년 내손해사정업무관련보험관련법규보험업법시행령사행규칙감독규정 동를 위반한사실과관련하여감 득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 손해사정사가선임요청일기준최근5년내손해사정업무관련보험사기방지특별법,형법,변호사법,개인정보신용정보관련법규들위반한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 력이 있는 경무
    - 3) 손해사정사가선임 요청일기준 최근 5년 내감독규정 제9-16조 제5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요구하거나이를수취한사실이확인된경우
    - 4) 해당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게 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5) 손해사정사가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제 합의등 업무품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6) 보험회사가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 지않는경우
    - 7) 손해사정사가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8) 자동차사고의경우발생한손해를정비업체,의료기관등을 통해지급보증하거나,관련법규에따라정해진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 2.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등의

손해사정 지연시 사고현장 훼손·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 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함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년 원 일 20

작성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밖에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DR 손애보험주식회사 귀중

16-5 Sots



# 손해액 안내 확인서

보험종목	(무)프로미라이프 스마트아이사랑 보험
중권번호	865100758186
계약자	김아림

# - 확인사항-

- 1. ( 2025 )년 ( 01 )월 ( 12 )일 ( 강원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424 ) 소재 (하이원리조트 내 제우스) 에서 대인 )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사정법인 ( 한국해상화재손해사정(주) 이 프로프 한탈리 산정된 손해액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설명 받은 손해액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2.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3. 향후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체의 이의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확인자: 750+25 Juy(인) (주민번호: A466) \$ 2078/16

DB손해보험주식회사



# 손해액 안내 확인서

보험증목	(무)프로미라이프 스마트아이사랑 보험
중권번호	865100758186
계약자	김아림

# - 확인사항-

- 1. ( 2025 )년 ( 01 )월 ( 12 )일 ( 강원 정선군 고한용 하이원길 424 ) 소재 (하이원리조트 내 제우스) 에서 대인 )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사정법인 ( 한국해상화재손해사정(주) 이으로 부터 산정된 손해액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설명 받은 손해액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2.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3. 향후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 확 인 자: 건덩이는건덩 (주민번호:

DB손해보험주식회사

#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른 손해사정서 교부에 관한 동의서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교부가 되지 않으며, 본 동의서는 손해사정서 교부를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본 동의서의 개인(신용)정보는 당사 및 당사의 위탁회사와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보유 및 이용기간 은 이용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입니다. (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1. 관련법규

[보험업법 제 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 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 9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① 법 제 189조 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하다.
- 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9조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서에 피보험 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손해사정서 교부에 대한 동의

동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대표)수익자
교부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sup>\*</sup> 손해사정서 교부에 미동의하는 경우 손해사정서가 교부되지 않는 대신, 당사 조사자가 손해사정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드립니다.

### 3. 민감정보 제공

사고자의 민감정보(건경	강,질병정보)가 포함된 손해사정서를 피	보험자 본인 또는 계약자 및 수익자이	세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대표)수익자
민감정보포함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sup>\*</sup> 피보험자가 민감정보(건강,질병정보 포함) 제공에 동의할 경우 민감정보가 포함된 손해사정서가 교부대상자에게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4. 손해사정서 교부 방법에 대한 동의서

구 분	동의사함	휴대전화 / 전자우편 / 팩스번호 / 직접전달	비고
① 휴대전화			
② 전자무편			
③ 팩 스			
④ 직접전달			
⑤ 기 타			

\* 만14세 이하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신 작성 및 돔의합니다.

년 잌 20

동의자:[

법정대리인] 성명 : 기사

KOREA 한국해상화재손해사정주식회사

#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른 손해사정서 교부에 관한 동의서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교부가 되지 않으며, 본 동의서는 손해사정서 교부를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본 동의서의 개인(신용)정보는 당사 및 당사의 위탁회사와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보유 및 이용기간 은 이용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입니다. (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1. 관련법규

[보험업법 제 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 9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① 법 제 189조 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 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9조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손해사정서 교부에 대한 동의

동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대표)수익자
교부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sup>\*</sup> 손해사정서 교부에 미통의하는 경우 손해사정서가 교부되지 않는 대신, 당사 조사자가 손해사정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드립니다.

#### 3. 민감정보 제공

사고자의 민감정보(건경	방,질병정보)가 포함된 손해사정서를 피	기보험자 본인 또는 계약자 및 수익자이	세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대표)수익자
민감정보포함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sup>\*</sup> 피보험자가 민감정보(건강,질병정보 포함) 제공에 동의할 경우 민감정보가 포함된 손해사정서가 교부대상자에게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4. 손해사정서 교부 방법에 대한 동의서

구 분	동의사항	휴대전화 / 전자우편 / 팩스번호 / 직접전달	비고
① 휴대전화			
② 전자우편			
③ 팩 스			
④ 직접전달			
⑤ 기 타			

\* 만14세 이하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신 작성 및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의 법정대리인] 성명:

KOREA 한국해상화재손해사정주식회사

한국해상화재손해사정(주)

1팀(수원)/박원준/192168555